

#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거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·입주권 전매를 포함)의 부동산거래신고 시 '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'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, 6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본 샘플을 참고하여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.

(양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계약자(본인) 성명	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계약자(본인)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		(휴대)전화번호 계약자(본인) 휴대전화번호		
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계약자(본인) 명의 예금(적금 등) 원	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계약자(본인) 명의 주식,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		
	④ 증여·상속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 금액 원	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, 펀드/보험해지, 귀금속 매도, 입주시까지 예상 추가소득 등 (②, ③, ④, ⑥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) 원		
	※ 4번 기재시 필수 입력 ※ 부부, 직계비속 중목으로 차입 받을 경우 그 밖에 관계(EX. V.그 밖에 관계(부부, 직계비속(부, 모, 자녀 등) [ ] 부부 [ ] 직계비속(관계 : 부, 모, 자녀 등) [ ] 그 밖의 관계( 형제, 자매, 사촌, 지인 등 )		※ 5번 기재시 필수 입력 [ ] 보유 현금 [ ] 그 밖의 자산(종류 : 미래소득, 보험금, 퇴직금 등)			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매도, 기존 전·월세 보증금 회수 등 원		⑦ 소계 [②+③+④+⑤+⑥]합산금액 원			
① 자금 조달계획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	주택담보대출	보유주택 담보대출 등 원			
		신용대출	마이뉴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원			
		그 밖의 대출	제기동역 아이파크 해당동, 호수의 분양가 60% 원 (대출 종류 : 중도금 집단 대출)			
	차입금 등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제기동역 아이파크를 제외한 기존 보유주택 여부(주택, 분양권, 입주권 포함) [ ] 미보유 [ ] 보유 ( 건) 제외한 그 외 주택 중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				
	⑨ 임대보증금 취득 주택 향후 임대시 실행 계획 자금 (⑩.입주계획 : 임대 체크 시)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원				
	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(가족/친인척 포함)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빌리는 자금 등 원	⑫ 소계 [⑧+⑨+⑩+⑪]의 합산 금액 원				
※ 11번 기재시 필수 입력 [ ] 부부 [ ] 직계비속(관계 : 부, 모, 자녀 등) [ ] 그 밖의 관계( 형제, 자매, 사촌, 지인 등 )						
⑬ 합계		[⑦ + ⑫] 합산금액(*아파트 총 공급금액과 금액 동일)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원		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	⑬번 항목과 동일한 금액 원			
	⑮ 계약이체 금액		⑬번 항목과 동일한 금액 원		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	작성 금지		원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작성 금지		원	
	지급 사유( )		작성 금지			
⑱ 입주 계획	[ ] 본인입주 [ ] 본인 외 가족입주 해당 입주예정자 칸 체크 (입주 예정 시기 : 28년 09월 )		[ ] 임대 ⑲번 기재시 체크 (전·월세)	[ ] 그 밖의 경우 작성 금지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·제7항·제9항·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날짜 기재 금지(신고시점에 기재 예정)

년 월 일

제출인 계약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#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안내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·입주권 전매를 포함)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'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'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

## 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참고사항

항목	상세항목	세부내용	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	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이에 준하는 자금
	증여·상속 등	가족 등 증여·상속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
	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
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	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
	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	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기존 보증(전세)금	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중전부동산 권리가액	재건축, 재개발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
이에 준하는 자금		부동산등의 매각(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
차입금등	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
		신용대출	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
		그 밖의 대출	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
	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V 체크, 보유란에 V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(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)
	임대보증금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
		신규 임대차 계약	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
	회사지원금·사채	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
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	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	
조달자금 지급방식	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
	보증금·대출금 승계	기존 대출금·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·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
	현금 등 기타지급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
입주계획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(ex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	그 밖의 경우(재건축 등)	입주 또는 임대 이외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